

제25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(제2차)

의원 발의 조례안 (6건)

거창군의회

- 목 차 -

| 의안번호 | 건 명 | 쪽수 |
|----------|--|----|
| 2020-132 |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(기획예산담당관) | 1 |
| 2020-59 |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(행복나눔과) | 7 |
| 2020-133 |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(체육시설사업소) | 15 |
| 2020-135 |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경제교통과) | 21 |
| 2020-136 | 거창군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산림과) | 25 |
| 2020-134 |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(농업축산과) | 27 |

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(권순모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-132 |
|----------|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|
| 발의일자 | 2020.11.24. |
| 발 의 자 | 권순모, 김종두, 최정환, 권재경, 이홍희, 신재화, 표주숙, 이재운, 심재수, 박수자, 김향란 의원 |

1. 제안 이유

- 거창군의 소셜미디어 관리 ·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게시물의 유지·관리(안 제5조)
- 라. 소셜미디어의 활용(안 제6조)
- 마. 기자단 운영 및 교육·훈련 지원(안 제7조 및 제8조)
- 바. 포상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,
「국정 홍보업무운영 규정」 제10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0. 11. 25. ~ 11. 30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의 소셜미디어를 관리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,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셜미디어”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, 트위터, 페이스북, 카카오톡,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.
2. “콘텐츠”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글자·음성·음향·이미지·영상 등 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)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소셜계정”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식별 정보를 말한다.

제3조(소셜미디어의 운영) ① 거창군수 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거창군민 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정 소식,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
2.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
3. 주민의견 등 군민 소통 및 군민 참여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)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,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게시물의 유지·관리)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.

1.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2.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3.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4. 특정기관·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
5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6.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한 경우
7.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8. 욕설·장난·음란물 등 공익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9. 인종, 국가, 성별, 성소수자, 장애인,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
10.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
11.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
12.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소셜미디어의 활용)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, 홍보,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할 수 있다.

1. 주요시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
2. 축제, 문화,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·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
3.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군정발전을 위한 사진, 영상 등의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
5.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기자단 운영)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창군 소셜미디어 기자단(이하 “기자단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기자단은 군정시책 및 행사 홍보, 지역명소 소개, 재난·재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.
- 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1.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
 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3.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 4. 군 소셜미디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5. 제작한 콘텐츠를 군에 게시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 등 군 공식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타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활용한 경우
 6.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
 7.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8조(교육·훈련 및 지원) ① 군수는 기자단의 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·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② 군수는 기자단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, 기자신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, 단체, 공무원 및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14조)를 삭제한다.

붙임 1 비용추계서

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제7조 기자단 운영을 위한 경비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제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소셜 미디어 기자단에 대한 원고료, 교육, 이벤트 등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| 연 도 | | 1차년도 (2020년) | 2차년도 (2021년) | 3차년도 (2022년) | 4차년도 (2023년) | 5차년도 (2024년) | 합 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구 분 | 블로그운영 | 41,040 | 36,000 | 36,000 | 36,000 | 36,000 | 185,040 |
| | 영상기자단운영 | 24,960 | 62,400 | 62,400 | 62,400 | 62,400 | 274,560 |
| | 카카오톡 메시지 이용권 | 0 | 5,000 | 5,000 | 5,000 | 5,000 | 20,000 |
| | 기타보상금 | 0 | 5,000 | 5,000 | 5,000 | 5,000 | 20,000 |
| | 소계(a) | 66,0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499,600 |
| 구 분 | 세출 | | | | | | |
| | 소계(b) | | | | | | |
| 총비용(a-b) | | 66,0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499,600 |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(단위 : 천원)

| 연 도 | | 1차년도 (2020년) | 2차년도 (2021년) | 3차년도 (2022년) | 4차년도 (2023년) | 5차년도 (2024년) | 합 계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구 분 | 의존 재원 | | | | | | |
| | 소계 | | | | | | |
| | 보조금 |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| 구 분 | 자체 수입 | | | | | | |
| | 소계 | | | | | | |
| | 지방세 | | | | | | |
| 세외수입 |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 |
| 기금 |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구군비 | | 66,0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499,600 |
| 기타 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66,0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108,400 | 499,600 |

1. 부대의견 : 해당사항 없음
2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

(최정환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-59 |
|----------|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|
| 발의일자 | 2020.8.25 . |
| 발 의 자 | 최정환, 김종두, 권재경, 신재화, 표주숙, 이재운, 이홍희, 심재수, 박수자, 김향란, 권순모 의원 |

1. 제안이유

-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 양립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지급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라. 수급자의 의무, 환수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 ~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행복나눔과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11. 18. ~ 11. 23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마. 타 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현황

서울(서초구), 부산(수영구), 인천(남동구, 계양구, 동구, 서구, 연수구)

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(이하 “육아휴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 대상 및 금액) ① 장려금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2.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
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. 다만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.

제4조(지원 신청)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장려금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2.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 101호 서식을 따른다)
-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장려금의 지급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.

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.

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장려금의 지급 중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.

1.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
2.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
3.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

제7조(수급자의 의무)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(장려금의 환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
2.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
3.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대장 관리 등)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—**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신청서**

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|
| 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 | 처리기간 | |
| 신청인 | 성명 | 생년월일 | | | |
| | 주소 | | | | |
| | 거주기간 | | | | |
| | 전화번호 | | | 휴대폰 | |
| 자녀 성명 | | | | 자녀 생년월일 | |
| 육아휴직 기간 |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 | | |
| 입금계좌번호 | 은행명() 계좌번호() | | | | |
| 호 | 예금주() | | | | |
| 「거창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지원대상자 주소 : 지원대상자의 관계 : 지원대상자 성명 : 서명(날인)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div> | | | | | |
| 거창군수 귀하 | | | | | |
| 첨부서류 :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. *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1호서식 | | | | | |
| 유의사항 | | | | | |
| □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하거나,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거창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 ○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이전에 복직하거나,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소멸할 경우 ○ 지원대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| | | | | |
|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| | | | | |
| 1.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○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: 주민등록 등·초본 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</div> 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○ 목 적: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및 내역 관리 등(신청자 확인 및 식별, 수급자격 확인, 안내 및 정보전달) ○ 항 목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거주기간, 자녀 성명, 자녀 생년월일, 계좌번호,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○ 보유기간: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신청자 본인은 거창군수가 상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</div> | | | | | |
| ○ 신청인은 위 유의사항과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·제공에 동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합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신청인(대리 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 </div> | | | | | |

[별지 제2호서식]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

| 연번 | 신청일 | 출생(입양)아 | | | 지원대상자 | | | 거주 기간 (년 월) | 주소 (전화 번호) | 계좌번호 (은행명) | 육아 휴직 기간 | 지급 일 | 지급 액 | 비고 환수 (중단) 사유 및 일자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성명 | 생년 월일 | 출생 순위 | 관계 | 성명 | 생년 월일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

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분위기 조성

○ 관련조문

제3조(지원대상 및 금액) ②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.

2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추계의 전제

- 연차별 지원 계획

(단위 : 명)

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연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합계 |
| 지원 수 | 20 | 25 | 30 | 35 | 40 | 150 |

※ 2019년 기준 거창군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수 : 18명

(출처 : 한국고용정보원[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])

○ 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| 1차년도 (2021년) | 2차년도 (2022년) | 3차년도 (2023년) | 4차년도 (2024년) | 5차년도 (2025년) | 합계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출 | 군비 | 36,000 | 45,000 | 54,000 | 63,000 | 72,000 | 270,000 |
| | 소계 | 36,000 | 45,000 | 54,000 | 63,000 | 72,000 | 270,000 |

3. 관련의견 : 해당없음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○ 비용추계 : 연간 대상자 수 × 300천원 × 6개월

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
(이재운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-133 |
|----------|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|
| 발의일자 | 2020.11.24. |
| 발 의 자 | 이재운, 김종두, 이흥희, 심재수, 박수자, 김향란, 권재경, 표주숙, 신재화, 최정환, 권순모 의원 |

1. 제정이유

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와 스포츠 마케팅 계획의 수립을 정함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(안 제6조~제7조)
 -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마.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운영, 간사를 정함(안 제8조 ~ 제10조)
- 바. 재정 지원(안 제11조)

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- 1)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, 전국,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
- 2)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
- 3)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지방재정법」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체육시설사업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11. 25. ~ 11. 30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지훈련 선수단”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·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·실업팀·학교·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.
2. “스포츠마케팅”이란 전지훈련 선수단, 국내외 대회를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유치·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,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2. 전년도 대회·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·전지훈련팀 현황
3.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
4. 각종 전국 및 경상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
5.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

제5조(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·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, 전국,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
3. 전지훈련시설 운영·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예산담당관, 환경과장, 체육시설사업소장
2.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
3. 체육·숙박업·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명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제11조(재정 지원)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, 전국,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
2.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
3.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재정 지원(안 제11조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: 1개 대회 20,000천원 이상
보조금 지원

- 전지훈련 기간 10일 이상, 전국대회 기간 2일 이상

* 선수 및 관계자 1명, 1일 30,000원 소비(경상남도 지침)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1년) | 2차년도 (22년) | 3차년도 (23년) | 4차년도 (24년) | 5차년도 (25년) | 합계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총 비용(a - b) | -355,000 | -400,000 | -400,000 | -400,000 | -500,000 | -2,055,000 | |
| 세출 | 전지훈련 | 200,000 | 250,000 | 300,000 | 350,000 | 400,000 | 1,500,000 |
| | 전국대회 | 270,000 | 300,000 | 350,000 | 400,000 | 450,000 | 1,770,000 |
| | 소계(a) | 470,000 | 550,000 | 650,000 | 750,000 | 850,000 | 3,270,000 |
| 세입 (유치 효과) | 전지훈련 | 300,000 | 400,000 | 450,000 | 500,000 | 600,000 | 2,250,000 |
| | 전국대회 | 525,000 | 550,000 | 600,000 | 650,000 | 750,000 | 3,075,000 |
| | 소계(b) | 825,000 | 950,000 | 1,050,000 | 1,150,000 | 1,350,000 | 5,325,000 |

3. 관련 의견

-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실적 및 예산확보에 따라 추계치는 변경될 수 있음.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유치효과(세입) : 연인원(체류일수×선수 및 가족 등) × 30,000원

- 21년도 전지훈련 세입 : 10,000명×30,000원=300,000,000원

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재운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-135 |
|----------|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|
| 발의일자 | 2020.12.1. |
| 발 의 자 | 이재운, 김종두, 이흥희, 심재수, 박수자, 김향란, 권순모, 최정환, 신재화, 권재경, 표주숙 의원 |

1. 제안이유

향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거창사랑상품권 종이형 권면 금액 추가(안 제3조제2항)

- 1) 1,000원권
- 2) 2,000원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경제교통과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0.12. 1. ~ 12. 7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·제2호를 제3호·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·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,000원권
2. 2,000원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1. 5,000원권</p> <p>2. 10,000원권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1,000원권</p> <p>2. 2,000원권</p> <p>3. 5,000원권</p> <p>4. 10,000원권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권재경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-136 |
|----------|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|
| 발의일자 | 2020. 12. 1. |
| 발 의 자 | 권재경, 김종두, 최정환, 이재운, 이흥희, 신재화, 심재수, 권순모, 박수자, 김향란, 표주숙 의원 |

1. 제안이유

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,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입장료 변경(안 별표1)

| 구분 | 요금 | 적용 |
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일반 | 3,000원 | 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|
|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. | | |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7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산림과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12. 1. ~ 12. 7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1. 입장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분 | 요금 | 적용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일반 | 3,000원 | 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|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
(이재운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-134 |
|----------|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|
| 발의일자 | 2020.11.24. |
| 발 의 자 | 이재운, 김종두, 이흥희, 심재수, 박수자, 김향란, 권재경, 표주숙, 신재화, 최정환, 권순모 의원 |

1. 제정이유

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책무(안 제3조)

- 1) 군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2) 마을대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

다. 지원대상(안 제4조)

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

라. 지원기간(안 제5조)

- 1)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기간 중 시행
- 2) 재배품목,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

마. 지원범위(안 제6조)

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바. 사업신청 및 지원결정(안 제7조 ~ 안 제8조)

사. 완료보고 및 지도감독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농업기술센터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11. 25. ~ 11. 30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 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(이하 “마을공동급식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마을대표(마을의 이장,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.

제5조(지원기간)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,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범위)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신청)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(별지 제2호서식)

제8조(지원 결정)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,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,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완료보고)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, 공동급식 사진,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

1. 신청인(마을대표)

가. 성명: (생년월일:)
 나. 주소: (연 락 처:)

2. 마을 현황

| 마을명 | 거주현황 | | 공동급식 참여 인원 | | | | | |
|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|------|
| | 농가(호) | 인원 | 계 | 시설·원예 | 과수 | 수도작 | 축산 | 그 밖에 |
| | | | 명 | | | | | |

○ 참여비율: 퍼센트(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)

3. 급식계획

가. 급식장소: (위 치:)
 나. 조리인력 성명: (연락처:)

4. 총 사업비: 천원

가. 조리인력 인건비: 천원
 나. 식재료 구입비: 천원
 다. 그 밖의 경비: 천원

- 붙임 1. 사업계획서 1부.
 2.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참여자 명단 1부.

위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(마을 대표): (인)

거창군수 귀하

[붙임]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계획서

1. 사 업 명:

2. 사업기간: 20 ~ 20

가. 급식지원기준일수 : 일

나. 급식기간: 일부터 일까지(일)

3. 사 업 자

○ 마을대표 성명: 전화번호:

4. 식재료 수급계획

| 조리원 성명 | 급식기간 | 식재료 구입 계획 | | | |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
| | | 계 | 육고기 | 생선류 | 채소류 | 그 밖에 |
| | | kg | kg | kg | kg | kg |
| | | kg | kg | kg | kg | kg |

5. 조리인력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소 | 연 락 처 | 계 좌 번 호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|
| | | | |

6. 사업비 내역

| 구 분 | 세 부 내 용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인건비 | 천원(원/일 × 일) |
| 식재료 구입비 | 천원(구입품목:) |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

[마을명:]

| 연번 | 주소 | 성명 | 비고 |
|----|----|-----|----|
| 계 | | ○○명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마을공동급식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

3. 관련 조문

- 안 제6조(지원범위)
 -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2020년도 지원 사업비 기준 추정
- 다. 추 계 결 과 : 2021 ~ 2025년(5년간)사이 세출 20억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억(5%), 시군 19억(95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계 | 1차년도 (2021년) | 2차년도 (2022년) | 3차년도 (2023년) | 4차년도 (2024년) | 5차년도 (2025년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| 2,013,000 | 380,600 | 391,600 | 402,600 | 413,600 | 424,600 |